

계절학기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7.12.11.개정)

제2조(개설시기) 계절학기는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하며, 사정에 따라 개설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. (2017.12.11.개정)

제3조(수강대상)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해당과목의 성적이 D, F인 자
2. 졸업시까지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3. 계절학기 현장실습 수강자
4. 기타 개설과목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(2017.12.11.개정)
5. 타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목 및 진로탐색 학점제 참여 교과목 수강자 (2022.11.23.신설)

제4조(개설과목) ① 계절학기의 개설교과목은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.

② 계절학기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강의시 수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, 강사·겸임교원이 강의시 수강인원이 7명 이상인 경우 개설한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개설할 수 있다. (2012.12.18.개정)

③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운영규정에 따른다. (2012.12.18.개정),(2017.12.11.개정)

제5조(수강신청 및 학점) ① 계절학기의 수강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 계절학기 수강신청서를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,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7학점 이내로 하며,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학기당 수강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. (2012.12.3.개정),(2020.2.25.개정)

③ 계절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. 다만, 인터넷 강좌는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 (2017.12.11.개정)

제6조(수강료) ① 수강료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이 규정 제3조 3호, 5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. (2017.12.11.개정),(2022.11.23.개정)

제7조(강의기간 및 시간) ① 계절학기는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강의시간은 1학점당 15시간으로 한다. 단, 계절학기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은 관

련 규정에 따른다. (2017.12.11.개정)

제8조(성적평가 및 인정) 계절학기의 성적 평가방법은 정규 학기의 평가방법과 같으며,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장학생 선발, 학사경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(2017.12.11.개정)

제9조(강사료 지급) 계절학기의 강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
1. 전임교원(외국인 교원 제외)은 수강인원이 전공 5명 이상, 교양 10명 이상인 경우 시간당 강의료의 50%를 지급한다.(2012.12.18.개정)
2. 강사, 겸임교원은 수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시간당 강사료의 100%를 지급한다. (2012.12.18.개정)
3. 수강인원 101명 이상은 학기 중 시간강사 강의료의 1.3배로 지급
4.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, 타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목 및 진로탐색 학점제 참여 교과목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. (2017.12.11.개정),(2022.11.23.개정)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